

*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안) 입법예고

농림부공고 제2006-102호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농림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5일
농림부장관

1. 제정이유

2006.3.14일 개정된 수의사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19호)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세부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대상 가축의 범위(안 제2조)

(1) 수의사법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 2에서 정한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 이외에 동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축을 정하려는 것임

1. 닭 2. 오리

* 사육 특성상 양축농가에 출장진료를 필요로 하는 가축을 정함

나.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 인 경우에만 동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1)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동물병원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수의사의 농촌지역 개업 확대를 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므로, 수의사법 제17조제2항 규정 중 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 인 경우에만 동 고시를 적용하도록 함

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에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5조)

(1)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1)의 세부시설기준 중 다음의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1. 진료실 2. 처치실

라.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등(안 제6조)

- (1)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2)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수의사는 [별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4)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함'이라는 표시를 동물병원 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 (5) 동 고시의 적용을 받아 일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별표1)에 따라 미설치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마. 기존 동물병원에 대한 조치(안 제7조)

- (1) 동 고시 제정 전에 수의사법에 따라 이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던 수의사도 동 고시의 적용을 받아 기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등 시설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가축방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6월 22일(목)까지 각 시·도지부를 통하여 우리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안) 전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동물병원 개업을 확대하고자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1]의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닭 2. 오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축농가'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산업동물'이라 함은 양축농가에서 사육되는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
3. '출장진료'라 함은 수의사가 양축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 규정 중 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이라 한다)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1]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중 다음의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료실
2. 처치실


제6조(개설신고 등) ①수의사가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1]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동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개설자는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함'이라는 표시를 병원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동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1)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라 미설치된 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 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7조(기존 동물병원에 대한 조치 등) ①이 고시 시행 전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동 고시 제5조 적용을 받아 기 설치된 진료실 또는 처치실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다만, 변경신고 시 [별지 1]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개설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확 인 서

본인은 양축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인)